

정 보 이 용 정 책

2016년 10월 1일

개 관

정보이용자는 크게 정보사업자와 최종이용사로 분류됩니다. 정보사업자는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용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의미하며, 정보의 실제 소비자로서 자신의 내부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는 자는 최종이용사를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정보이용자가 최종이용사/가입자인 동시에 타 부문의 사업에서는 정보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위탁매매 고객에게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자체 매매거래 용도로도 정보를 이용하는 증권회사)

본 정보이용정책(이하 “정책서”)는 정보사업자에 의한 정보 제공서비스와 최종이용사에 의한 정보 이용에 적용되는 정책, 요건 및 기타 정보 이용 관련 행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책서에 기재된 요건은 정보이용자와 코스콤간 체결하는 정보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본 정책서의 목적상, 코스콤과 “일반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사는 “정보사업자”로 간주되며, 코스콤과 “최종이용사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또는 정보사업자의 가입자는 “최종이용사”로 간주됩니다.

본 정책서는 산업 내 IT기술의 변화, 시장참여자의 수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코스콤에 의해 검토되고 필요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정책서의 최신버전은 웹사이트(<https://data.koscom.co.kr/policy>)에서 조회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업데이트될 경우 최소 90일 이전에 공표될 것입니다.

정책서의 내용 또는 정보이용자의 실제 비즈니스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코스콤의 계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어의 정의

아래 용어의 정의는 본 정책서에만 사용되며, 그 외 용어의 정의는 코스콤과 체결한 계약에 기재된 용어의 정의 또는 URL(<http://data.koscom.co.kr/tncdef>)를 참조한다.

최종이용사

정보를 코스콤으로부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 수신하는 자로서 정보를 외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코스콤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자를 말한다.

ID

특정한 사용자 또는 기기에 정보 이용권한을 부여하는 고유의 식별자를 말한다. ID는 암호와 결합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기기

정보를 수신, 이용 또는 조회할 수 있는 단말장치, 데이터수신기, 조회용 기기 및 기타 정보를 이용하는 기술적 수단을 말한다.

사용자

정보를 이용할 권한이 부여된 자연인(일반 개인 또는 특정법인 내부의 개별 인원 또는 피고용인/계약직원)를 말한다.

2. 외부제공권한 옵션에 따른 정보 이용 범위

주문서의 “정보의 외부제공권한 옵션” 섹션에 의거 정보의 외부 제공권한이 부여되는 경우(정보사업자로 승인된 경우), 해당 옵션별로 허용된 정보이용 범위(본 정책서의 조건을 전제로 함)는 다음과 같다.

[옵션 1] 일반용

- (1) 내부용으로 정보 이용
- (2) 내부용으로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정보를 제공
 - 단, 코스콤의 사전승인 없이 가입자에게 실시간정보를 데이터피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없다.
- (3) 방송매체(아래 옵션 4 참조)를 통하여 일반대중에게 정보를 제공
- (4) 코스콤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2차 정보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

[옵션 2] 소매사업 전용

- (1) 정책서(섹션 7)에 명시된 개인가입자의 자격을 충족하는 가입자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
 - 코스콤의 사전승인 없이 가입자에게 데이터피드 방식으로 정보(지연정보 포함)를 제공할 수 없다.
 - 내부용도의 정보 이용은 정보의 외부 제공서비스를 위한 개발, 운영, 테스트 및 품질 관리 용도에 한하여 허용된다.

[옵션 3] 웹사이트 체결가서비스용

- (1) 웹사이트 및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반대중에게 호가 관련 정보(가격, 수량 등)을 제외한 정보를 조회 방식으로 제공. 단, 다음의 요건을 전제로 한다.
 - 정보를 이용하는 제3자(일반대중 등)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가공, 저장 또는 재분배할 수 있는 수단, 도구 또는 지원(API, DDE 등을 포함)의 제공은 엄격히 금지된다.
 - 본 권한 옵션에 의한 정보 제공은 전문가형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내부용도의 정보 이용은 정보의 외부 제공서비스를 위한 개발, 운영, 테스트 및 품질 관리 용도에 한하여 허용된다.

코스콤은 본 옵션에 의한 정보사업자의 정보 제공이 상기 제한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단독적 재량으로 판단할 재량권을 가진다.

[옵션 4] 방송매체 전용

- (1)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신문, TV, 라디오 및 이와 유사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 단, 다음의 요건을 전제로 한다.
 - 정보의 수신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정보를 선택 또는 검색할 수 없어야 한다. (양방향 송수신방식의 서비스 불가)
 - 정보의 수신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해 정보를 저장 또는 가공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합리적 방법으로 방지되어야 한다.

코스콤은 본 옵션에 의한 정보사업자의 정보 제공이 상기 제한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단독적 재량으로 판단할 재량권을 가진다.

명확성을 기하자면, 공용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또는 웹 기반의 정보 제공서비스는 방송매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3. 데이터피드 제공 요건

코스콤과의 계약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정보사업자는 자신의 가입자에게 데이터피드 방식으로 실시간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코스콤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데이터피드 방식으로 실시간정보를 수신하고자 하는 가입자에게 가입자와 코스콤간 직접 계약 체결이 필요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가입자에 대한 데이터피드 제공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규 데이터피드 가입자]

- (1) 가입자가 웹기반 주문시스템(<https://data.koscom.co.kr/indirectdata>) 접속후 주문 내용 입력 (가입대상 정보상품, 이용사 정보, 연락처 등)
- (2) 코스콤이 가입자의 주문내용을 확인 (필요시 코스콤은 가입자에게 추가적 정보 또는 주문 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 (3) 코스콤이 가입자에 확정공문 전달 및 정보사업자에게 승인 통지

[기존 데이터피드 가입자]

- (1) 가입자가 웹기반 주문시스템(<https://data.koscom.co.kr/indirectdata>) 접속후 원 주문 내용을 수정
- (2) 코스콤이 가입자의 주문내용 확인후 가입자에게 확정공문 전달 및 정보사업자에게 승인 통지

4. 사용량단위 기준

사용량단위 기준은 리포트의 작성 및 가격표의 변동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코스콤과의 계약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실시간정보의 이용은 다음의 사용량단위 기준 중 하나로 통제, 기록 및 리포트 제출이 되어야 한다.

(1) ID

실시간정보에 대한 이용권한은 유일한 ID를 통해 통제 및 리포트되어야 한다. 리포트 대상이 되는 ID는 매월 초일을 기준으로 정보 이용권한이 부여된 ID 또는 코스콤이 승인한 이와 유사한 기준으로 한다.

[ID 기준 적용시 신고 기준]

- 정보 조회 용도의 경우, 정보 조회권한이 부여된 개별 사용자를 사용량단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별 사용자에는 유일한 ID가 부여되어야 한다. 하나의 ID로 복수의 기기를 통해 정보를 이용(동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 해당 ID를 통해 정보 이용권한이 부여된 기기 전체가 리포팅 대상이 된다.
-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Stand-alone형 조회단말(네트워크를 통한 타 기기와의 정보 송수신이 없는 독립형 조회용 단말)의 경우에는 정보 수신권한이 부여된 기기(단말)의 수를 리포트할 수 있다.
- 비조회형 정보이용의 경우, 정보를 이용하는 개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량단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별 어플리케이션에는 유일한 ID가 부여되어야 한다. 하나의 ID로 복수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를 이용(동시 접속 세션)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 해당 ID를 통해 정보 이용권한이 부여된 어플리케이션 전체가 리포팅 대상이 된다.
- 복수의 원천(복수의 정보사업자 또는 직접수신)로부터 정보를 수신하여 이용하는 경우 ID 수는 개별 원천별로 집계되어야 하며, 복수의 원천으로부터 정보를 이용하는 사용자 또는 기기에 대한 ID 수의 순계산(Netting)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조회요청건

- “조회요청건”은 하나의 증권종목에 대한 특정 선택시점에서의 가입자의 실시간정보 요청을 말한다.
- 조회요청건을 사용량단위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정보사업자는 개별 증권종목 단위로 모든 조회요청건의 수를 산정하여 리포트에 포함하여야 한다.
- 스트리밍 또는 자동 업데이트를 수반하는 정보 제공 또는 복수 사용자에게 대한 정보의 동보전송(브로드캐스팅)의 경우 조회요청건이 사용량단위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다.

(3) 코스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승인한 유사한 기준

5. 리포트

정보사업자는 정보상품별로 정보의 이용내역을 매월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보사업자와 승인된 관계사 내부의 정보 이용 주소 및 실시간정보 사용량단위 수 (변동료 부과 대상)
- (2) 정보 이용권한이 부여된 개별 가입자의 이름, 주소 및 개별 주소에서의 실시간정보 사용량단위 수 (변동료 부과 대상)
 - 데이터피드 방식으로 정보를 수신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코스콤이 식별할 수 있도록 리포트에서 구분하여 표시
- (3) 정보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2차 정보사업자의 이름 및 주소 (지연정보를 수신하는 2차 정보사업자도 리포트 대상에 포함된다.)

최종이용사는 정보상품별로 정보의 이용내역을 매월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1) 최종이용사 자신과 승인된 관계사 내부의 정보 이용 주소 및 개별 주소에서의 실시간정보 사용량단위 수 (변동료 부과 대상)

웹사이트 체결가서비스 및 방송매체를 통해 정보를 수신한 자에 대해서는 리포트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다. 단, 웹사이트 체결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사업자는 코스콤이 요청할 경우 정보를 제공중인 웹사이트의 주소(URL)와 해당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의 접속권한(ID 등)을 코스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로그인이 요구되거나 유상 서비스일 경우)

일반적으로 (1) 변동료가 면제된 정보의 이용 및 (2) 계약에 의거 변동료가 면제된 기기/사용자에 대해서는 상기의 리포팅 의무가 면제된다. (단, 2차 정보사업자에 대한 상기 리포팅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다만, 코스콤은 3개월전에 사전 서면 통지하고 특정한 변동료 면제 정보를 리포트 대상으로 포함시킬 재량권을 가진다.

6. 변동료 면제 기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가격표의 변동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 (1) 정보사업자의 가입자 대상 서비스와 관련된 시스템의 개발, 운영, 테스트 및 품질관리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사용자/기기. 단, 다음의 요건을 전제로 한다.
 - (i) 코스콤이 요청시, 정보사업자는 변동료 면제 대상 사용자/기기의 내역을 제출하고 이러한 사용자/기기가 변동료 면제 대상 용도에 한하여 정보를 이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것
 - (ii) 코스콤이 판단하여 변동료 면제 대상 사용자/기기의 수가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변동료 면제 대상 사용자/기기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2) 재해대비시설에서의 사용자/기기. 단, 다음의 요건을 전제로 한다.

- (i) 일반 사업장에서 정보 이용에 대해 변동료를 납부하고 있을 것
- (ii) 재해대비시설에서 일반사업장과 병행하여 정보를 이용되지 않을 것 (단, 재해대비시설의 테스트시에는 병행 이용 가능)
- (iii) 재해대비시설에서의 사용자/기기의 수가 일반사업자의 사용자/기기 수를 초과하지 않을 것
- (iv) 코스콤은 재해대비시설에서 이용중인 사용자/기기 내역을 요구하고 득할 권한을 가지며, 코스콤이 판단하여 이러한 사용자/기기의 수가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변동료 면제 대상 사용자/기기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7. 개인가입자

개인가입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입자를 말한다.

- (1) 자연인일 것
- (2) 금융기관, 자문회사, 신용기관, 거래소(유사 거래시설 포함), 정부기관, 감독기관, 전문 협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속성의 기관에 소속되지 않을 것
- (3) 비즈니스 목적(상업적 트레이딩, 투자 관련정보 제공 등)으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
- (4) 자기 자산의 관리 또는 투자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이용할 것
- (5) 제3자와 관련된 목적(제3자 자산의 대리운용, 제3자에 대한 투자 자문 등)으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
- (6) 제3자에게 정보를 분배 또는 제공하지 않을 것

가격표에 명시된 할인된 변동료는 개인가입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정보사업자가 자신의 가입자에 대해 개인가입자 대상의 할인된 정보이용료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해당 정보사업자는 상기 개인가입자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개인가입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합리적 증거를 득할 것. 최소한 해당 가입자로부터 개인 가입자 지위에 대한 확인서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확인서는 상기의 개인가입자 요건, 해당 가입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는 확인 서명, 서명일자 및 가입자의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동 확인서는 인터넷 방식 또는 전자 약관 형태로도 가능하다.
- (2) 정보사업자는 확인서 또는 개인가입자 자격 관련서류를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코스콤이 요청시 제출할 것

고객사의 특정 서비스가 개인가입자 전용 용도라고 코스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코스콤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상기 의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8. 비조회형 정보이용

비조회형 정보이용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1) 트레이딩 목적 이용 : 자동 또는 반자동의 주문/호가 생성, 스마트오더라우팅(최선조건 주문처리), 시장 조성(마켓메이킹), 알고리즘매매, 프로그램매매, 고빈도매매 등의 목적으로 실시간정보 이용
- (2) 기타 비조회형 정보이용 : 다음 용도의 비조회형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실시간정보 이용
 - 위험관리
 - 계량분석
 - 포트폴리오관리
 - 가공지표 산출 등

주문서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한, 정보사업자 또는 최종이용사는 비조회형 정보이용 용도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해당 용도를 코스콤에 고지하여야 한다.

(1) 정보사업자 및 코스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최종이용사

- (i) 최초 계약 체결시 주문서에 비조회형 정보이용 내역을 기재
- (ii) 이후 비조회형 정보이용의 변경시, 다음의 절차 옵션 중 하나를 택일

옵션 1	주문서 기재내용을 업데이트 (* 업데이트 절차는 코스콤과의 계약서 참조)
옵션 2	신고양식(https://data.koscom.co.kr/listnd)을 이용하여 코스콤에 고지

(2) 코스콤과 직접 계약이 요구되지 않는 최종이용사

- (i) 신고양식(<https://data.koscom.co.kr/listnd>)을 이용하여 코스콤에 비조회형 정보이용 내역을 고지
- (ii) 이후 비조회형 정보이용의 변경시 동 양식을 이용하여 코스콤에게 변경된 비조회형 정보이용 내역을 고지

비조회형 정보이용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가격표에 명시된 비조회형목적 이용료가 부과된다. 명확성을 기하자면, 코스콤은 비조회형 정보이용을 통지한 가입자에게 직접 비조회형목적 이용료를 청구한다.

비조회형 정보이용에 대한 통지가 불충분하거나 통지가 누락된 경우, 코스콤은 비조회형목적 이용료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다.

코스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보사업자의 특정한 서비스가 가입자들이 비조회형 정보이용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예를 들면, 웹사이트에서의 조회 전용 서비스)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는 상기의 고지 의무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9. 지수 산출 및 매매용금융상품 생성 목적의 정보 이용

주문서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한, 정보이용자는 정보사업자와 최종이용사를 막론하고 코스콤의 사전 동의 없이 (1) 지수 산출 또는 (2) 매매용금융상품의 생성 내지 가격도출 용도로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매매용금융상품 : 국내외 거래소, 시장플랫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매매되거나 또는 매매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지분증권, 파생계약(선물, 옵션, 차액결제약정(CFD) 등을 포함) 및 기타 증권

10. 최종이용사에 의한 정보의 제한적 재분배

최종이용사는 제한적으로 발췌된 정보에 한하여 자신의 일상적 금융서비스 활동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구두 또는 서면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제한적 정보 제공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 (1) 정보의 제공이 비시스템적인 방법으로 행해질 것. 여기서 “비시스템적”이란 비정기적이고 드문 주기의 정보 제공으로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수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2) 정보의 제공이 정보의 판매 또는 상업적 분배 활동과 관련되어 행해지지 않을 것
- (3) 정보를 유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정보의 대체물로 이용되지 않으며, 또한 그러한 대체이용의 취지가 있지 않을 것

코스콤은 최종이용사에 의한 정보 제공이 본 섹션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러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거나 허용하지 않을 권한을 가진다.

11. 기술대리인

기술대리인은 정보사업자 또는 최종이용사의 정보 이용 및 분배와 관련하여 기술적/기능적 역할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기술대리인은 코스콤과의 직접 계약 체결없이 정보사업자 또는 최종이용사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범위에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기술대리인에 의한 정보의 수신 또는 이용이 필요할 경우, 정보사업자는 코스콤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대리인은 다음과 같다.

- 정보사업자의 마케팅, 판매, 기술지원 서비스, 행정관리를 대행하는 자
- 서비스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을 대행하는 자

단,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정보사업자/최종이용사는 기술대리인으로 하여금 코스콤과 정보사업자/최종이용사가 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이하 "정보이용계약")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술대리인을 통해 가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기술대리인이 아닌 정보사업자가 직접 가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기술대리인을 통해 가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사업자는 정보이용계약에 의거 가입자의 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할 책임을 진다.
- 정보사업자/최종이용사는 기술대리인이 정보를 이용 또는 분배함에 있어 정보이용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임을 보증한다.
- 정보사업자/최종이용사는 정보이용계약에 기재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술대리인이 코스콤의 조사(Audit)를 수용할 것임을 보증한다.
- 정보사업자의 브랜드는 가입자에게 명시적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정보사업자의 로고와 이름은 서비스 화면상 항상 게시되어야 한다.
- 코스콤이 요청시 정보사업자/최종이용사는 상기 준수요건에 대한 준수여부를 코스콤이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정보이용권한 통제절차, 리포팅 절차, 서비스 화면 등) 그리고 /또는 서비스 접속권한(ID)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코스콤은 기술대리인을 승인 또는 불인정할 전적인 권한을 지니며, 코스콤의 단독적인 판단으로 기술대리인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2. 시장대표지수 제공 관련 특수조건

시장대표지수는 한국거래소의 지수 중 3개 지수(KOSPI지수, KOSPI200지수 및 KOSDAQ지수)를 말한다.

정보사업자가 최종이용사 가입자에게 시장대표지수 정보만을 제공하고 타 KRX지수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조건이 적용된다.

- (1) 가입자의 정보 이용내역에 대한 리포팅 의무가 면제된다.
- (2) 외부제공권한 옵션 1 (일반용 : 정책서 섹션 2 참조)이 승인된 정보사업자는 코스콤의 사전승인 없이 최종이용사 가입자에게 데이터피드 방식으로 시장대표지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